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026년 1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604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7호 중 “농촌유학 운영”을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통학 버스 지원 등 통학

편의를”을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유학생”을 “학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